

2020 온라인미디어 아트체인지업 예술활동 지원 사업 저작권 사례집

20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 아트체인지업 저작권 사례집



2020 온라인미디어 아트체인지업
예술활동 지원 사업 저작권 사례집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인 : 박종관

발행일 : 2021년 3월

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빛가람동 3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 : artchangeup@arko.or.kr

홈페이지 : www.arko.or.kr / artson.arko.or.kr

디자인 : 푸앙아르

본 사례집은 '2020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온라인 저작권 관리 개선 방안 컨설팅 및 연구 용역] 결과로 발간되었으며 자문·집필에 법무법인 (유한)지평의 최승수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본 저작권 사례집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으며, 승인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 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NTENTS

제1장 저작권 기초 상식	1.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8
	2. 누가 저작자인가 -----	9
	3. 누가 저작권자인가 -----	10
	4.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자와 다른 것인가 -----	10
	5.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	11
	6.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 제한으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	12
제2장 저작권 FAQ	1. 음악 저작물 -----	16
	2. 어문 저작물 -----	22
	3. 사진 저작물 · 영상 저작물 -----	27
	4. 무용 저작물 -----	34
제3장 저작권 상담사례	1. 음악 저작물의 이용 -----	38
	음악 저작물을 커버 또는 편곡하는 경우 -----	38
	음악 저작물을 영상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42
	2. 사진·영상 저작물의 이용 -----	48
	사진·영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48
	3. 일반 저작권 관련 사항 -----	52
	영상 제작 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	52
	저작권의 귀속 여부 -----	54
	저작권침해에 관한 사항 -----	55
	저작권재산권에 관련된 사항 -----	56
저작권 보호 기간 -----	56	
계약에 관한 사항 -----	57	
저작권료의 세금에 관한 사항 -----	58	

제1장

저작권 기초 상식

온라인 예술활동에 필요한 저작권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1장 저작권 기초 상식

1.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표현의 방법,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면 저작물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창작성 + 표현 + 사상·감정**이라는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창작성** : 소극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유치원생의 그림일기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개개 소재 자체는 창작성이 없고 이것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으면 그 집합물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 된다. 이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성을 부가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은 원 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데, 이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 **사상 또는 감정**
 - 저작물의 제호(제목) :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이나 제호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신문기사 : 신문기사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저작물이 된다. 단순히 사실 보도 기사라고 해서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 음란물 :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음란물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

는 것과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나 미술 작품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 **표현**
 -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 극단적으로 타인의 영상 저작물, 미술 작품, 소설 등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베끼지 않고, 기본 컨셉이나 아이디어만 차용하여 새로운 표현 작품을 만든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이것을 아이디어·표현이분법이라고 한다.
 -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이 특정 매체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무용가가 안무로 표현하는 순간 저작물로 성립되는 것이며, 이것을 반드시 녹화해야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누가 저작자인가

- **누가 저작자인가?**
 -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다만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되는 예외가 있는데,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가 된다. 회사에 소속되어 홍보팀의 일원으로 회사홍보 이미지를 창작한 경우, 그 홍보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자가 된다는 원리이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가?

- 저작물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자이어야 한다.
- 창작에 아이디어나 힌트 등을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 단순히 창작을 의뢰한 자도 저작자가 아니다.
- 다수가 창작에 관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공동저작물)
- 다만,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두 개 저작물의 결합이 된다. 이것을 결합저작물이라고 한다. (작사와 작곡 저작물은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

3. 누가 저작권자인가

- 저작물이라는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를 저작권자라고 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 따라서 누가 저작권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칙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창작자가 저작자이고, 그 저작자가 저작권자이다.

4.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자와 다른 것인가

-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 완성된 저작물 등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예능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한다.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자가 아니지만 저작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다.
-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라 한다.
- 저작권이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반면에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매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 작사, 작곡이라는 저작물이 완성된 후, 이 저작물을 노래하거나 연주함으로써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수, 연주자가 대표적인 저작

인접권자(특히, 실연자)이다.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창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 아무런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무방식주의')
- 저작권 성립을 위해 등록,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 저작권의 성질

- 허락 없이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 금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되어 있고, 또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국내 저작물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의 체계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는 두 가지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권의 양도성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 저작재산권은 각 지분 권리별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 이후에는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의 소멸

- 보호기간의 종료
-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재산권을 처분(양도, 이전, 설정 등)하지 않은 채 해산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공언(公言)하는 경우

6.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 제한으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복제,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부수적 복제 등, 문화시설에 의

한 복제 등, 저작물의 공정이용, 번역 등에의 이용 등이 있다.

- 각 저작권 제한 규정 또는 공정이용은 그 적용요건이 까다로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장

저작권 FAQ

예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 주요 질문과 관련 판례를 담았습니다.

제2장 저작권 FAQ

1. 음악 저작물

Q1. 비영리사업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배경음악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대중음악 음원을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작사가, 작곡가,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작사, 작곡 등 대개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가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하여 문의를 하면 됩니다. 가수나 연주자의 경우도 대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같은 신탁단체에 권리를 신탁해놓았으므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하여 권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탁단체에 신탁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해당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또는 저작권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를 직접 찾아서 권리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그리고, 동영상 제작 목적이 비영리,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같이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2. 소위 커버(COVER) 음악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 A. ‘커버(cover)’란 음악 분야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노래를 다른 음악가가 다시 연주하거나 재녹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원곡에 대하여 변형을 하면 일종의 편곡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편곡에 이를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면 커버란 원곡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즉 원곡을 실연(노래를 부르는 행위)하거나 복제하거나(커버 실연하는 것을 음원으로 만들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행위

에 해당합니다.

편곡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곡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서 원곡을 다듬는 정도에서부터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하기에 이르는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적어도 원곡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커버 또는 편곡을 해서 그러한 곡을 실연, 연주해서 음원 또는 영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해당 커버 음원의 원곡자를 찾아내어 (content ID라는 유튜브 자체 기술), 해당 원곡자에게 유튜브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원곡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원곡의 저작권자가 유튜브 측에 해당 커버 음악이 저작권 침해물이라고 내려달라고 하면 유튜브는 커버 음악을 내리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Q3. 인터넷을 통해 무료 음원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음원을 다운로드해 곡을 수정하고 편집해서 이번에 만드는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나요?

- A. 무료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어떤 유형의 이용을 허락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나 유형을 열거하지 않았다면, 원곡 그대로 이용하는 것만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BGM)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편곡자의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요?

- A.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제, 전송 등 저작권에 포함되는 이용허락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에는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이 있고 이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성명표시권이라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나아가, 편곡이라는 것은 원 작곡에 대하여 일정한 창작적 부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편곡자로 표시되어 앨범이 발매되었다면 해당 편곡자로 2차적 저작권 작성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편곡자의 이름도 표시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Q5. 유명 팝가수들의 음악을 본인이 기타나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요?

- A. 기타나 피아노로 해당 음악을 연주하여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해당 곡, 즉 작곡 저작물을 실연하여 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은 전송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작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곡의 연주 실황을 녹화하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를 구성합니다.

Q6.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A.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YouTube 동영상에 사용할 배경음악 또는 음향 효과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사용을 허락한 음원이라고 해서 이를 이용한 콘텐츠를 유튜브 아닌 다른 플랫폼에 올리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 음원의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하

는 것입니다.

또한 멜론 등 음악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음악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한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권한까지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7.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의 작품을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영상의 배경으로 쓸 수 있는지요?

- A. 저작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살아생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전주의 작곡가의 경우 음악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연주한 음원에 대하여는 아직 저작인접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립교향악단이 5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을 조성진과 협연한 것이 음반으로 발매되었고, 이 음원을 내가 만드는 유튜브 동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경우를 상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조성진 및 서울시향의 연주에 대하여는 실연자의 권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공연을 음반으로 만든 음반 제작자인 서울시향에게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곡자에 대한 권리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주하고 음반으로 만든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 대한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8. 무형문화재가 민요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 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나요?

- A. 우선 민요를 부르는 무형문화재의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초상 허락은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가 민요를 부르는 것은 실연(가창)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 실연을 동영상으로 채록하게 되면, 해당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저작인접권)는 무형문화재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연자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실연이 녹화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반드시 무형문화재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고, 해당 실연의 동일성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Q9. 무용 반주로 사용할 가야금 연주곡에 대한 권리처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A. 가야금 연주곡에는 가야금 연주자의 저작권, 가야금 작곡자의 작곡 저작권, 가야금 연주를 녹음한 음원 제작자의 저작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연주곡이 들어 있는 상업용 음반을 무용 공연 시 반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무용 공연이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입장료 등 수입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가야금 연주 음반을 무용 공연에 반주로 틀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작곡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작곡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주자, 음원 제작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주자 및 음원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10. 무용가가 전통 무용을 추면서 옆에서 연주자가 가야금을 연주하거나 가야금 연주 음반을 틀어 놓았을 경우 권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이 역시 위와 동일합니다. 가야금 연주곡에는 가야금 연주자의 저작권, 가야금 작곡자의 작곡 저작권, 가야금 연주를 녹음한 음원 제작자의 저작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연주곡이 들어 있는 상업용 음반을 무용 공연 시 반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무용 공연이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입장료 등 수입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가야금 연주 음반을 무용 공연에 반주로 틀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작곡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작곡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연주자, 음원 제작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연주자 및 음원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어문 저작물

Q1. 기존에 출판된 시, 소설,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도 문제가 없는지요?

- A. 출판물을 낭독하고 녹음하여 이를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적으로 작가의 어문 저작물을 실연(낭독)하고, 복제(녹음)하여 전송(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작가는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기간 동안 출판물의 복제, 배포 전송에 관하여 출판사에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문 출판물을 읽어주는 동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출판물의 복제,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만 꼭 한정되지 않더라도, 인용의 ‘정당한 범위’ 즉 인용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2.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 A.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나, 보도 표현에 있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른 것이면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보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뉴스 기사들은 대부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여겨지고 있고, 또 실제 저작물을 전제로 이용허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원칙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 신문사 내부의 규칙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 처음부터 저작자 지위가 신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문사를 상대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Q3.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Be The Reds!”라는 문구가 들어간 빨간 티셔츠를 입고 축구경기를 해설하는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지요?

- A.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 문구를 소재로 하여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만든 도안으로 법원에서 미술 저작물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가 미술 저작물인 “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다수 사진을 자신의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도안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도안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명백하게 위 티셔츠 도안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 때에는 위 티셔츠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은 만들기 위해 해당 책의 표지, 제목 및 도서의 내용 일부(요약)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 A. 기존 출판물을 요약해서 요약글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권 작성권을 침해하거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한은 원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어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데,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나아가 출판사의 도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은 출판권의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출판물에 대하여 복제, 배포권 및 전송권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책의 제목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책에 포함되어 있는 삽화, 표지디자인 등은 별도로 미술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Q5. 신문기사 내용은 일부만 게시하거나 아예 제목과 링크 주소만 게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 A.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한편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해당 링크가 어떤 방식인가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블로그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기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임베디드 링크’ 또는 ‘프레임 링크’(블로그상에서 해당 콘텐츠를 직접 보거나 감상하는 방식) 등의 방식이라면 이는 저작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신문 기사를 캡처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신문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진 저작물 · 영상 저작물

Q1.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여 전시작품을 촬영하고 이에 대한 소개, 비평 등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 A. 미술관 등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은 미술 저작물입니다.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보유합니다. 갤러리 등에서 사진촬영을 허용하여 핸드폰 등을 촬영하였다면 갤러리 등이 미술품의 복제에 대하여 허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는 것은 전송을 의미하는데 이것까지 갤러리 측 또는 화가가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Q2. 회사 홍보 목적으로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자 외부 업체 영상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A.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창작적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창작을 의뢰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창작에 필요한 소재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상 제작을 외부에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저작권은 영상을 실제 촬영하고 편집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며, 해당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가져오려면 반드시 영상저작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작성해놓아야 합니다.

Q3. 유명 건축물을 찾아 다니면서 이를 촬영하고 편집해서 SNS에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 A. 저작권법은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

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이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로·공원 등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②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③ 가로 공원 등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④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건축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복제한 것을 배포, 전송, 방송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이고, 그것이 외부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허용되는 복제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사진,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Q4. 인터넷 밴드, 카페, 밴드 등에서 와인 동호회에 올라온 와인관련 시음평 등을 모아 재구성하고 편집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려는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요?

A. 트위터에 기재된 짧은 글들도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작가 이외수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모아 자신의 동

의 없이 전자책으로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단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출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판사가 이외수씨의 트위터에 게시된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라는 글을 비롯하여 총 56개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하여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출판사 측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인 “북릿”에 수록하고, “네이버북스”, “올레이북스”, “삼성리더스허브” 애플리케이션에 각각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도록 함으로써 무단 전송의 방법으로 이외수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동호회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5. 여행 블로거들이 올린 해외여행에 관한 정보, 소개글, 사진을 모아서 이번엔 자신이 제작하는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을 여행하면서 소개된 유명여행지에 대한 소개글 또는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것이라서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요?

A. 짧은 글이나 유명 유적지를 전형적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여행전문 서적 안에 기재된 내용을 다른 회사에서 그 홈페이지 중 유럽에 대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난에 위 여행 서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베껴어 게재한 것이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찰스카트머투에 관한 기술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와 그 직원들이 비록 기존의 다른 여행안내 서적이나 백과사전 등에 소개된 내용을 기초로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 중 자신들의 축적된 여행경

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의 기획 의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선별한 내용만을 모아 나름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거기에 원고 등이 현장 방문 시 느꼈던 감상 등도 일부 보태어 기술한 것이므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블로거들의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물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다소 위험하다고 할 것입니다.

Q6. 외부에 강사를 초청하여 회사 직원들 상대로 강의하는 장면을 녹화하였습니다. 물론 강사의 허락을 받고 녹화를 한 것이지만, 영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20분짜리 강연을 5분으로 줄이고, 강연 내용 중 일부의 배열을 바꿨습니다. 강사가 녹화를 허락하였으므로 이후 영상의 편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강사가 녹화를 허락한 것은 강연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강연 저작물의 변형, 즉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거나 또는 동일성유지권 포기까지 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7.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영상 중 극히 일부인 30초 분량을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분량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지요?

A.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가져다 썼을 때 어느 정도 분량은 허용되고 그 이상은 안 되는지에 관한 규칙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110분 분량의 영화 중 30초에 해당하는 분량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화 중 ‘러브레터’의 ‘오갱끼데스까’라고 산을 향하여 외치는 극히 짧은 장면을 인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일부 영상의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실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재미 삼아 잘라서 이용한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Q8. 최신 영화를 소개하면서 리뷰 또는 비평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신 개봉작의 일부 장면 또는 스틸컷 이미지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채널의 리뷰를 보고 구독자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유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되는 측면이 있어서 영화사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는지요?

A. 연속적인 영상의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저작물의 장면이나 등장인물 등이 정지된 2차원 또는 3차원 형상으로 만들거나, 사진 저작물에 나타난 형태를 3차원 형상으로 만드는 경우 복제권 침해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상 저작물은 물리적으로는 개개의 장면의 연속체로서 그 개개의 장면은 사진과 조금도 성질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연자인 배우도 해당 화면에 촬영된 자기의 초상에 대해서는 고유한 정신적, 재산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스틸컷 이미지 또는 일부 영상에 배우의 초상이 들어가 있다면 배우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사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보도 비평 등 목적의 영상 제작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지방 관광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VLOG)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거리를 걸어가면서 촬영 중 우연히 TV 소리나 영상이 같이 찍히거나, 길거리를 지나는 장면을 찍다가 가게 같은 곳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이 영상에 잠깐 찍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요?

A.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부수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사진 촬영, 녹

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그 제작 시 주된 대상은 사람이거나 길거리, 집안 풍경 등인데 촬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잠깐 보이거나 들리는 TV 소리나 음악 소리 등은 부수적으로 복제된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영상 등을 블로그에 올리거나(공중송신), 공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부수적 복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부수적으로 녹음, 촬영된 정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거나, 영화 촬영처럼 모든 장면이 철저한 기획으로 촬영되는 경우, 길거리 장면을 촬영하면서 우연히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부수적 복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10. 이번에 제작하는 회사 홍보 동영상 또는 사업설명회 소개 동영상 내에 강연자가 강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강연자가 강연에 활용한 자료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일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A. 별도의 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연자가 강연자료에 미술 작품 또는 영화 클립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미술 작품 영화 클립은 별도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강연자가 책임지고 권리처리를 해놓았으면 이를 녹화하여 SNS에 올리게 되어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나, 강연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비평목적의 인용(여기에서 인용이란 복제, 전송, 방송, 공연 등 저작물의 모든 이용행위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한다면 허용되는 인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평, 연구, 교육 목적성,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

Q11. 한국 영화의 예고편, 홍보 영상 또는 본 영화의 장면 일부 등을 편집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감상평 등을 이야기하는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A. 영화의 예고편은 ‘영화’라는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고편 또한 이용에 앞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하여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의3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 평론 카페의 활동과 영화 평론지의 제작을 위해 영상 저작물(영화)을 인용하고자 한다면 ① 이용 목적이 저작물에 대한 비평 등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② 인용된 부분(피인용저작물)이 보족,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한 부정적 성질을 가짐으로써 ③ 해당 영화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를 대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을 일부 편집 및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및 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을 시에는 이러한 저작물의 변형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후 해당 이용 방법에 대해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2. 웹툰 또는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번에 만들 동영상에 중간 중간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A. 결론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

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Q13.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서 온라인에 게재할 경우 인터뷰 대상인 전문가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 A. 물론입니다.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초상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가 인터뷰한 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무용 저작물

Q1.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A. 아이돌 그룹의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해당 안무(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

룹 구성원들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소녀들로 구성된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해당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샤이보이’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무저작권이 인정되는 댄스 커버를 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영상을 만들고 다시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전송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Q2. 무용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 A. 무용이나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돌 그룹의 ‘샤이보이’ 안무를 방송 댄스학원에서 교습한 것이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위 샤이보이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무 저작권은 해당 안무를 창작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안무를 의뢰한 연예기획사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안무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안무저작권을 양수받지 않았다면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안무를 따라 하는 동영상 제작할 경우 안무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저작권 상담사례

2020년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에 참여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저작권 상담사례를 담았습니다.

제3장 저작권 상담사례

1. 음악 저작물 이용

— 음악 저작물을 커버 또는 편곡하는 경우

Q1. 음악 관련 A 유튜버가 편곡한 악보를 구입하여 저희 단체는 그 악보로 피아노 연주를 하며, 거기에 새롭게 무용을 넣고, 드럼, 반도네온 악기랑 함께 연주하는 동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악보를 사서 구입을 했다고 해도 피아노 연주는 A 유튜버가 편곡한 곡인데, 편곡자가 알게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A 유튜버와 상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우선 악보를 샀다는 것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위하여 편곡된 악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종이 한 장을 샀다는 것이지, 그 악보 안에 들어 있는 작곡, 편곡 저작권에 관한 이용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 악보는 A 유튜버가 파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악보를 채보하여 파는 사람도 원저작권자(작곡가) 또는 편곡저작권자(A 유튜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악보를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복제권) 위반죄를 범한 것입니다.

A 유튜버가 원곡, 예를 들어 맘마미아 원곡을 편곡한 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본다면 A 유튜버도 ‘맘마미아 편곡’ 곡에 대하여 새로운 작곡 저작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맘마미아 원곡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곡자에 대하여 A 유튜버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귀하가 A 유튜버가 편곡한 악보를 바탕으로 연주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원저작권자 및 A 유튜버의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A 유튜버의 허락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저작자인 맘마미아 작곡자에게는 유튜브가 해당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원곡자를 찾아내어 보상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유튜버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유튜브가 편곡 저작권까지 찾아낼지는 의문임), 최소한 귀하가 A 유튜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Q2. 저희가 이번에 유명 외국 가수의 곡을 재해석하여 다른 장르의 공연팀과 협연하는 내용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가수의 곡을 그대로 재현하는 영상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로 약간의 창작이 가미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와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의 개인 채널로 업로드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1. 우리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재산권(작사·작곡)에 대한 제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도 준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장료나 광고 수익 등을 받지 않고, 거리에서 A가 유명 외국 가수의 곡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은 해당 곡의 작사와 작곡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공연 주최자가 A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곡의 작사, 작곡가에게 공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위 공연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방송한다면 이것도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녹화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다는 것은 공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이용허락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이고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송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2. 재해석한다는 것, 새로운 스타일로 약간의 창작이 가미되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원래 작사 작곡의 원형을 변형하여 예를 들어 음악 장르를 달리할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원곡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게 되면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사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커버 공연이 이루어지고, 원곡에 대하여 일부 변형한 방식으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건 질의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사실 원곡의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일정한 수익분배를 원저작권자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3.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니 대중음악을 편곡하게 되면 커버와 다르게 2차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상 편곡을 하게 되면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버와 편곡에서 저작권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커버(cover)’란 음악 분야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노래를 다른 음악가가 다시 연주하거나 재녹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원곡에 대하여 변형을 하면 일종의 편곡행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편곡에 이를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란 원곡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즉 원곡을 실연(노래를 부르는 행위)하거나 복제하거나(커버 실연하는 것을 음원으로 만들거나 영상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행위에 해당합니다. 편곡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곡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서 원곡을 다듬는 정도에서부터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기에 이르는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적어도 원곡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

다. 어찌 되었든 편곡을 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Q4. 저작권 관련 단체에 문의해보니 유튜브는 커버 형식의 곡을 개인이 올리더라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해결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A. 유튜브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커버 또는 편곡을 해서 그러한 곡을 실연, 연주해서 음원 또는 영상으로 올렸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해당 커버 음원의 원곡자를 찾아내어 (content ID라는 유튜브 자체 기술), 해당 원곡자에게 유튜브 광고수익 중 일부를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원곡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원곡의 저작권자가 유튜브 측에 해당 커버 음악이 저작권 침해물임으로 내려달라고 하면 유튜브는 커버 음악을 내리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Q5. 기존 곡을 2차 편곡하여 연주하는 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곡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향후 구독자가 늘어나면 수익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경우 문제가 না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과 수익이 나지 않을 시 상세정보 기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 A. 수익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기존 곡을 편곡하여 연주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면 작곡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공연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언급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익이 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세요.

연주만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결국 작곡 부분만 실연한다는 것이 됩니다.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안전하기로는 작사가/작곡가

의 이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악 저작물을 영상의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Q6. 퍼포먼스 콘텐츠 내에 기성곡을 활용하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 A. 기성곡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성곡을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예를 들어 “밤이 깊었네”라는 곡을 이용할 경우, 해당 곡의 작사, 작곡 저작권자,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음원 제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만이라도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저작권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Q7.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콘텐츠 안에 가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저작권협회에 문의한 결과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튜브에 사용을 해도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싶은 가곡이 원곡은 일본 곡이고 한국의 음악인이 재편집한 곡인데, 그 가곡이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곡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일본 곡을 편곡한 한국 음악인에게 해당 곡의 저작권이 있는 것인데, 해당 음악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곡을 협회에 신탁하지 않았다면 방법은 해당 음악인을 찾아서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음악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방송, 음반 제작 등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법 제10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 나. 제73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저작권법 제50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의 기준은 저작권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본인은 콘텐츠에 관한 리뷰를 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 초 대회나 공연 등에서 사용되던 음악은 가요와 스트릿댄스 디제이(정식 곡명 루트 알 수 없음) 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가요 같은 경우 음원 찾아주는 어플로도 찾기가 힘들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다양한 경로로 리믹스가 된 음원이 다량 음원으로 믹스가 되어있어, 음원의 저작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영상 가요를 업로드 시 수입이 저작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허락없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상물은 상관 없나요? 출처가 불분명한 스트릿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9년 전 캠퍼드터 촬영한 ○○지역의 당시 모습을 담은 인물들의 초상권도 문제가 되나요??

A. 대회 공연에서 실연된 음악/음원에 대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저작권처리 에 관한 제도로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위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저작권처리가 되지 않은 음악·음원이 사용된 경우, 유튜브가 자체 저작권탐색기술(content ID)을 통해 저작권자·저작권접권자를 찾아내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위와 같이 자체 기술을 통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한 사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스트릿 음악도 결국은 저작권자·저작권접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29년 전 캠코더 촬영 시에 관중 또는 연주자의 얼굴이 부수적으로 촬영되었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9. 영상을 제작할 때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같은 일반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작곡자에게 직접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저작권협회의 동의를 얻는 등의 예술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세한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 A. 한국의 작곡가의 경우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단체에 저작권을 신탁해놓았기 때문에 작곡저작권 또는 작사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안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이용허락신청서식 > 영상물·광고 이용허락신청 > 영화신청서 작성 후 제출(Fax 또는 E-mail)
국내곡	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저작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상업영화/10억 미만 저예산영화/영화제 출품 영화에 따라 사용료 차이가 있으므로 영화신청서 하단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영화 승인서와 계산서가 발행되고, 사용승인이 완료됩니다.
외국곡	사용하고자 하는 곡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 음악출판사(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등)가 있으면 해당 음악 출판사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곡을 관리하는 음악 저작권단체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업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협회에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

- 음반에 수록된 곡을 사용하는 경우와 영화의 배우들이 연주 또는 가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배우들의 가창 또는 연주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Q10. 저작권의 범위와, 효과음악을 BGM으로 쓸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야 저작권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지요?

- A. 타인의 음악, 그것이 효과음악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노래곡이든지 물론이고, 허락 없이 BGM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Q11. 가야금 연주단의 곡을 연주하며 연주 음악에 무음이 들어가는 공연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려 합니다. 가야금 연주단에 가야금곡의 사용 여부를 여쭙보았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작곡가에게도 따로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곡가(작곡저작권)에게 곡 사용 여부 신청 시 따로 서류 양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하여 작곡을 맡긴 곡도 있습니다.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은 저희 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작곡저작자에게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작곡자가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라면, 이용허락

및 사용료 관련하여 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세요.

이번 사업을 위하여 작곡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완성된 곡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곡자에게 있습니다.

작곡에 대해 의뢰비(업계에서는 ‘곡비’라고 합니다)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완성곡의 저작권이 의뢰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할 때 저작권을 넘겨받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이 양자 사이 합의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완성곡의 저작권은 작곡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2. 사진 · 영상 저작물의 이용

— 사진 · 영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Q1. 작품 제작의 모티브가 된 K-pop에 대해서 설명할 때 2~5초 정도 짧게 K-pop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영상을 인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A. 이것은 명확한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인용한 분량이 지극히 짧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당 저작물에 있어서 질적으로 중요한지에 따라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짧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저작물 인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영상은 저작물이지만, 그 안에 아티스트의 초상은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 즉 초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저작권 문제가 없는 프리소스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하나요?

A. 프리소스 이미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자가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의 이용도 허락하고, 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자유 이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시는 해야 합니다.

Q3. 작품 제작의 연구과정을 위해 건축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작가소개 영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타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 특정 작가소개 영상에 그 작가와 무관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에는 분명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진 저작권자, 영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를 복사·인쇄하거나 건축물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실제로 시공하는 것도 복제행위입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나 영상이 특정 작가가 창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서 보았듯이 해당 작가에 대한 비평 차원에서 일부 인용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해당 작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작품 제작의 연구 과정을 위해 건축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작가소개 영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제가 직접 촬영하여 영상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A.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 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이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로·공원 등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 공원 등 개방된 장소 등에 항상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렇다면 외부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여도, 복제한 것을 배포, 전송, 방송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이고, 그것이 외부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은 허용되는 복제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사진,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송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비평목적의 인용(여기에서 인용이란 복제, 전송, 방송, 공연 등 저작물의 모든 이용행위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한다면 허용되는 인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평, 연구, 교육 목적성,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

Q5. 픽사베이 사이트는 모든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음악 등을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무료라는 말만 듣고 퍼다 썼다가 나중에 저작권 침해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요?

A. 픽사베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은 사용은 허용되지 않다고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License for Content – Pixabay License
 - Content on Pixabay is made available to you on the following terms (“Pixabay License”).
 - Under the Pixabay License you are granted an irrevocable, worldwide, non-exclusive and royalty free right to use, download, copy, modify or adapt the Content for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다운로드, 복제, 변형 등이 가능합니다.)
 - Attribution of the photographer, videographer, musician or Pixabay is not required but is always appreciated. (저작자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해주세요.)
- The Pixabay License does not allow:
 -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월페이퍼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 금지.)
 -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e.g. as a posters, digital prints, music files or physical products, without adding any additional elements or otherwise adding value (추가적인 요소 또는 가치를 추가하지 않고 포스터, 디지털 프린트, 음악 파일, 물리적 제품 그 자체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 금지.)
 - Depiction of identifiable persons in an offensive, pornographic, obscene, immoral, defamatory or libelous way; or (음란하거나 비도덕적 모욕적인 방식으로 특정 사람을 묘사하는 것 금지.)
 - Any suggestion that there is an endors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by depicted persons, brands, vocalists and organisations, unless permission was granted. (묘사된 인물, 브랜드, 가수, 기관에 의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 금지.)
 - Please be aware that while all Content on Pixabay is free to use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items in the Content, such as identifiable people, logos, brands, audio samples etc.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copyrights, property rights, privacy rights, trademarks etc. and may require the consent of a third party or the license of these rights - particularly for commercial applications. Pixabay does not represent or warrant that such consents or licenses have been obtained, and expressly disclaims any liability in this respect. (픽사베이 이미지 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콘텐츠인 저작권, 상표, 프라이버시,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관해서는 픽사베이는 보증하지 않으니 알아서 처리하기 바람.)

3. 일반 저작권 관련 사항

— 영상 제작 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Q1. 작품 작가 소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작품 제작과정에 대해서 다른 소재들을 인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나 다양한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작품 제작도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으며 실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지적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작품 제작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 때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작권법 제28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품 제작이 연구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특정 작사를 소개한다는 정도만으로 연구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 작가의 비평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작가의 작품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유명 외국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새롭게 재창작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원작을 밝히고, ‘각색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티브로 활용한 것이므로 본 공연의 대본을 쓴 제가 ‘작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모티브를 얼마나 인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리 구조, 등장인물, 플롯 등 주요한 극적 저작물의 핵심을 그대로 차용하였다면,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지 원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티브를 새롭게 창작하였다는 것이, 기존 작품에서 나온 아이디어만을 차용한 것이라면 저작권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판단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 완성작을 보기 전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고 했던 받지 않고 했던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었다면(기존 문제아 작품에 대하여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면), 그러한 새로운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허락을 얻지 않고 기존 작품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즉,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차용하였다면) 기존 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 책임은 져야 합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일정한 변형을 가한 것이라면, 원작-각색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단지 아이디어 또는 착상만을 차용하고 작품의 성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새로운 작품의 작가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저작권의 귀속 여부

Q3. 사진작가에게 촬영 비용을 주고 모델 착용 컷을 의뢰했을 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와 저 그리고 모델 모두 갖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사진작가나 모델이 이때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만 귀속됩니다. 사진을 의뢰한 사람이나 사진의 모델이 된 사람은 사진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진을 의뢰하면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아야 그 사진에 대한 복제, 전시 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 비용을 주었다는 것은 촬영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미일 뿐이고, 저작권 양수도 대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총괄대표의 저작자 여부

하나의 공연 예술 전시 중 프로젝트 4개가 각각 진행되었고, 1개의 프로젝트마다 담당 책임작가가 있으며, 전체 총괄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젝트의 저작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4개 프로젝트의 총괄대표를 4개의 프로젝트마다 각각 저작자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 책임작가만 각각 저작자로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프로젝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응 그것이 공연 또는 전시물 기획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것이 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 살펴봅니다. 우선 저작물의 저작자는 실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에 총괄대표가 실제 창작적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저작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총괄대표가 실질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고, 해당 프로젝트 담당 작가가 총괄대표를 공동저작자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만약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해당작가의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저작자로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작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과, 공연 전시물의 크레딧에 “제작”

“창작”이라는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에 제작자 타이틀을 넣었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자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크레딧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저작권침해에 관한 사항

Q5. 작년에 모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제 의지로 올렸던 창작 인물화가 불특정 다수 모임 행사에서 피켓, 현수막, 엽서 등 출력물로 활용되었습니다. 공익적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작은 창작료를 받고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1년 여가 지난 후 동 게시판 이용자 중 한 모임의 구성원이 새로운 공익적 성격의 출판물을 제작하고 판매했는데, 작년에 선의로 제공했던 제 그림 소스를 무단으로(제계 설명 없이) 재가공해서 판매제품에 동봉해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취해야 할 절차나 방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A.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귀하여 창작인물화의 저작권은 귀하에 있는 것이고, 귀하가 기존에 허락한 것은 피켓, 현수막, 엽서 등 출력물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위 미술 저작물로 동의 없이 출판물에 넣는 것은 무단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 무단복제 행위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저작권침해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출판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지적하고 바로 회수 폐기할 것,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저작재산권에 관련된 사항

Q6. ○○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의 4조 2항에 “대상 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무가의 작품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안무가가 저작재산권을 꼭 등록해야만 하는지요?

A. 저작권료 지급 의무와 저작권 등록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용허락 계약서에 저작권을 등록해야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조항이 없는 한 저작권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

Q7.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0년이라고 하셨는데 혹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의 사후 70년인가요?

A.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 그 지위는 저작권 양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생전에 저작권을 양도했다면 그 원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은 만료되는 것입니다. 양도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저작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Q8. ○○구연 단체가 동화작가의 이야기 저작물을 낭독 및 녹음하여 온라인미디어 지원 사업 통합사이트에 링크형으로 게시 예정입니다. ○○구연 단체가 작가와 저작권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계약서상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요?

A. 동화작가의 저작물을 낭독하고 녹음하여 이를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적으로 작가의 어문 저작물(동화)을 실연(낭독)하고, 복제(녹음)하여 전송(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가와 ○○구연 단체 사이의 계약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유형 및 이용 매체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특정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양자 사이에 자유로이 합의로 정할 사항이나, 본건 사업의 기간 동안은 게시되어야 하니까 최소한 사업기간 동안을 계약기간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9. 제가 준비 중인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는 SNS로 모집한 10명의 시민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참여자들에게 스케치북과 사인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교육을 하고 각자 플립북을 제작합니다. 그 후 참여자들이 자신의 그림을 낱장마다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메일로 발송하면 제가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시민 참여자들과 맺어야 하는 저작권 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시민참여자의 그림 및 이를 촬영한 사진은 미술 저작물 및 사진 저작물입니다. 귀하가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를 유튜브 등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 전송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자와 귀하는 위 이미지 사용 목적에 맞게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아트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 지역문화재단에 배포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10명의 시민 참여자 중 2명이 중학생입니다. 청소년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걸까요? 또한 참여자들에게 지원되는 사례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례비를 입금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청소년 참가자의 친권자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친권자의 계좌로 사례비를 입금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와는 법률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는 미성년자의 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변제의 수령은 권리만 얻는 것이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 저작권료의 세금에 관한 사항

Q11.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납부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4.4%를 떼어 납부합니다.

202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 아트체인지업 저작권 사례집